

현장실습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

제 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동국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서울캠퍼스 현장실습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현장실습의 정의) 현장실습이란,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쌍방 간의 합의한 기간 동안 현장실습기관에서 실무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.

제 2 장 현장실습 운영

제3조(현장실습 운영 절차) 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.

1. 학기별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
2. 학기별 현장실습 실습기관 수요 조사 및 접수
3. 현장실습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정보 공지
4. 현장실습 참여 학생 신청, 접수
5. 실습기관 및 학생 간 연계 및 선발
6. 현장실습 참여 학생 대상 사전 교육
7.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
8. 실습기관별 현장실습 계획에 따른 실습 수행
9.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관리
10. 실습기관의 학생 출석부, 평가표 등 제반 서류 제출
11. 참여 학생의 보고서 등 제반 서류 제출
12.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학점 인정 처리

제4조(현장실습기관 선발기준) 현장실습기관은 계절제 현장실습은 1일 8시간(주5일제) 최소 4주(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최소 12주) 근무 가능하며, 고용 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상장기업
2.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
3. 법령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나 단체
4. 본교와 협약을 맺은 타 대학교의 연구소 또는 기관
5.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
제5조(협약체결) ① 본교와 실습기관은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본교, 현장실습생,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.

② 현장실습 대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협약서를 기준으로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

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1. 현장실습 인원 및 기간, 구체적인 실습(근무)계획
2. 실습기간 중 학생의 보건·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
3. 현장실습생에 대한 후생복지 및 실습수당
4.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

제3장 현장실습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

제6조(현장실습교과목 개설) ① 현장실습교과목은 본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으로 <별표 1>과 같다.

② 현장실습은 운영 시점과 기간에 따라 학기제 현장실습(1학기·2학기)과 계절제 현장실습(하계·동계계절학기)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③ 현장실습 기간은 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12주 이상, 계절제 현장실습의 경우 4주 이상으로 하며, 통산하여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7조(수강 자격) ① 현장실습교과목은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.

② 학기제 현장실습은 해당학기 재학생만 수강할 수 있다.

③ 계절제 현장실습은 재학생과 휴학생 모두 신청 가능하나, 휴학생의 경우 국고로 지원되는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.

④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할 수 없다.

1.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
2. 산업현장 근로자 등을 위한 산업체 위탁교육과정
3. 재직자특별전형 과정의 학생

⑤ 졸업(수료)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현장실습교과목을 신청할 수 없다.

제8조(수강 가능학점) ① 현장실습교과목은 학사과정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이내에서 수강한다.

② 현장실습교과목은 재학 중 통산하여 최대 18학점 이내에서 수강한다.

③ 계절제 현장실습은 재학 중 통산하여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수강하며, 1회 참여시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계절제 현장실습과 일반 계절학기 교과목을 동시에 수강할 경우, 두 과정을 통해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수강한다.

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휴학 중인 자는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⑥ 학기제 현장실습과 일반 정규학기 교과목을 동시에 수강할 수 없다. 다만, 사이버강의 및 야간강의는 제외한다.

제9조(수강 신청 및 선발) ① 현장실습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본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현장실습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현장실습기관은 신청자의 전공 및 실습분야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생을 선발한다.

제10조(수강신청의 확정) 수강신청은 현장실습기관별 협약 인원이 확정된 후에 담당부서(역량개발센터, IPP사업단 행정팀, 국제교류센터)에서 일괄 처리해 확정한다.

제4장 현장실습교과목 성적 평가

제11조(출결관리) 현장실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기타 세부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.

1. 현장실습 기간 중의 법정 및 임시 공휴일
2. 실습기관의 창립기념일 등 실습기관이 휴무한 경우
3. 대학의 공식행사,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한 경우
4. 국가의 의무적 소집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
5.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12조(성적평가 및 학점부여) ① 학점인정을 위한 최소근무시간은 4주 160시간이며, 4주 160시간을 3학점의 기준으로 하되, 현장실습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및 현장실습생이 제출한 보고서, 실습기관평가표 등을 토대로 학부(과)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학점을 부여한다.

② 학기제 현장실습교과목에 대한 이수인정 영역은 전공과목(전문교육과정)으로 학부(과)장 및 전공책임교수가 결정하고, 수강신청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
③ 계절제 현장실습교과목에 대한 이수인정 영역은 전공과목(전문교육과정), 자유선택과목 중 선택할 수 있으며, 전공과목(전문교육과정)으로 인정은 학부(과)장 및 전공책임교수가 결정하고, 수강신청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
④ 현장실습학점은 전공과 자유선택학점으로 구분하여 졸업학점에 포함하며, 재학 중 최대 12학점까지 복수전공을 포함하여 전공학점(전문교육과정)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⑤ 현장실습학점은 협약된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나, 실습기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습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 이수가 어려울 경우
2.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수행이 어려울 경우
3. 현장실습기관의 경영난 악화, 부도 등으로 실습수행이 어려울 경우

⑥ 현장실습교과목 이수 성적은 출석점수, 실습기관평가점수, 교수평가점수 등으로 구성되며, 총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(pass),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(fail)로 부여한다. 단, 현장실습생이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, 학점을 F(fail)로 처리할 수 있다.

제13조(장학)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성적은 장학생 선발의 성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.

제5장 기 타

제14조(현장실습생의 지위, 의무 및 벌칙) ① 현장실습생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의 신분과는 무관한 대학과 실습기관간의 현장실습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순수한 학생의 지위를 가진다. 다만, 실습기관과 학생 간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 사항을 따른다.

②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현장실습 출근부, 월간보고서,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
2. 본교 규정의 준수

3. 현장실습 기관에서 알게 된 기밀 누설 금지
 4. 현장실습 중 사건·사고 발생 시 즉시 담당부서(역량개발센터, IPP사업단 행정팀, 국제교류센터)에 신고
- ③ 현장실습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며,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1.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언행으로 실습기관 또는 대학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
 2. 현장실습 중 무단결근 또는 무단취소한 경우
 3.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
 4.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밀 누설 또는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
제15조(현장실습생의 보호)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담당부서(역량개발센터, IPP사업단 행정팀, 국제교류센터)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.

1. 근로자에 준하는 과도한 업무 또는 전공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받았을 경우
2. 실습계획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을 경우
3. 유해·위험한 현장실습 환경에 노출된 경우

제16조(기타) ① 이 내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등 관련 규정 및 현장실습기관과 체결한 사항에 따른다.

② 이 내규에서 명시되지 않은 현장실습교과목 운영상의 문제 발생 시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안전을 상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③ IPP형 일학습 병행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(2018.1.2. 제정)

이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1〉 현장실습교과목

| No. | 교과목명 | 실습기간 | 학점 | 개설학기 | 비고 |
|-----|----------|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---|
| 1 | 현장실습1 | 4주 | 3 | 계절학기 | 전공(전문)/자유선택 |
| 2 | 현장실습2 | 4주 | 3 | 계절학기 | 전공(전문)/자유선택 |
| 3 | 현장실습3 | 12주 | 9 | 1, 2학기 | 전공(전문) |
| 4 | 현장실습4 | 16주 | 12 | 1, 2학기 | 전공(전문) |
| 5 | 글로벌현장실습1 | 4주 | 3 | 계절학기 | 전공(전문)/자유선택 |
| 6 | 글로벌현장실습2 | 4주 | 3 | 계절학기 | 전공(전문)/자유선택 |
| 7 | 글로벌현장실습3 | 12주 | 9 | 1, 2학기 | 전공(전문) |
| 8 | 글로벌현장실습4 | 16주 | 12 | 1, 2학기 | 전공(전문) |